

제3회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포럼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일시: 2020년 8월 7일(금) 15:00~17:30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주최: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 법인
韓國公法學會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 ▶ 개회사: 이원우 회장(한국공법학회)
- ▶ 좌 장: 황성기 교수(한양대, 오픈넷 이사장)
- ▶ 제1주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 ▷ 발표: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 ▶ 제2주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정보제공요청의 헌법적 문제
 - ▷ 발표: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 제3주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확진환자 동선공개와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
 - ▷ 발표: 김민섭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 ▶ 종합토론
 - 사회: 김태호 기획이사(한국공법학회)
 - ▷ 토론: 이희정 교수(고려대), 남정아 박사(서울시립대)
장여경 이사(정보인권연구소), 조상연 연구관(질병관리본부)

목 차

제1주제

-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정 필운 1

제2주제

-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정보제공요청의 헌법적 문제 김 가연 17

제3주제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확진환자 동선공개와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 김 민섭 23

종합토론

- ▶ 토론 이희정 별첨
- ▶ 토론 남정아 41
- ▶ 토론 장여경 49
- ▶ 토론 조상연 55

【제1주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2020. 8. 7.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차 례

- I. 문제 제기
- II. 법제 현황과 분석
- III. 문제점과 개선 방안
- IV. 결론

I. 문제 제기

남, 28세	안양시 동안구	#용인73 확진자 접촉추경	5.19.	5.20.	5.20. 방역완료
--------	---------	-------------------	-------	-------	------------

5월 18일(월) 7:31~7:53 패스트푸드점(종로3가) 방문 (접촉자 및 자가격리자 없어 상호명 비공개)
 7:57~12:09 한국금거래소 9층(돈의동) 방문
 12:26 커피숍 (종로3가) 방문 (접촉자 및 자가격리자 없어 상호명 비공개)
 15:19~15:20 Jk 주얼리(봉익동) 방문
 15:24~15:30 mk 주얼리(봉익동) 방문
 15:33 멜리아 주얼리(봉익동) 방문
 15:36 핑크 주얼리(봉익동) 방문
 15:40~15:55 CIU종로모동점(묘동) 방문
 16:00~18:35 한국금거래소 9층(돈의동) 방문
 18:52~20:20 행복한 전집(돈의동) 방문
 20:28~23:53 앤리스 주점(종로3가) 방문
 지하철이용, 마스크 착용

종로구청 홈페이지 캡처

출처: 개인블로그(<https://blog.naver.com/siribio/221972894503>), 2020.7.18. 최종 방문

-3-

I. 문제 제기

■ 우리구 확진자 이동경로					
(확진자 번호)	장소 유형	상호명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25 #미부여)	성동#51 접촉 / 확진일 7. 14.				
	공공기관	접촉자 없어서 증거하지 않음	(창신동)	7.11.(화) 15:20 ~ 15:25 7.12.(수) 15:20 ~ 15:25	소독완료
(24 #15442)	대중교통	도보, 마스크 착용			
	성동#51 접촉 / 확진일 7. 13.				
(24 #15442)	음식점	접촉자 없어서 증거하지 않음	(창신동)	7.10.(금) 20:00 ~ 21:00	소독완료
	음식점	접촉자 없어서 증거하지 않음	(송인2동)	7.12.(수) 16:00 ~ 16:58	소독완료
	편의점	CU편의점 송인2동점	종로 383	7.12.(수) 17:00 ~ 17:01	소독완료
	대중교통	도보, 마스크 착용			
해외 입국 / 확진일 7. 3. / 외원					
(23 #112986)	숙박업	오라카이인사동스위즈	종로구 인사동 4길 18	7월 1일(수) 17:30	소독완료
	편의점	세븐일레븐 낙원점	종로구 인사동 4길 17	7월 1일(수) 17:40	소독완료
	성별진료소	종로구 성별진료소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36	7월 2일(목) 14:26 ~ 14:38	소독완료
	병원	중앙대병원	동악구 흑석로 102	7월 3일(금)	소독완료
	대중교통	행령차량 이용, 마스크 착용			

종암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2020.4.12.)의거 확진자가 공개기간 이후의 경보는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 공개기간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출처: 종로구청 홈페이지, 2020.7.18. 최종 방문

-4-

I. 문제 제기

©연합뉴스
'서울 송파 60번과 식사 모임한 광주 친인척 9명 확진(종합)'

전승현 입력 2020.07.18. 18:23 댓글 528개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1일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광주에서 하루 만에 다시 9명이 한꺼번에 확진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확진자와 모임을 가진 9명이 광주 177~185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가 10~12일 광주에 머물면서 친인척을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역학 조사에 들어갔다.

송파 60번 확진자는 경기 부천 17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광주에서 3차례 친인척과 식사했으며 확인된 밀접 접촉자는 현재 15명이다.

이들 15명 중 확진자 9명 외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9명의 연령대는 10대 미만 1명, 10대 1명, 30대 2명, 40·50대 각 1명, 60대 2명, 90대 1명이다.

방역 당국은 177번 확진자의 동선을 확보해 방역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확진자 8명의 거주지는 3개 자치구에 분산돼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 당국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9명 중 2명이 서구 계수초등학교 학생으로 확인해 이 학교 청교생 34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했다.

이들 남매가 다니는 계수초등학교는 최근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했다.

출처: 연합뉴스, 인터넷기사, 2020.7.18. 최종 방문 (<https://news.v.daum.net/v/20200718182344519>)

-5-

I. 문제 제기

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당일 500여명 다녀가

입력 2020.05.07 09:12 | 수정 2020.05.07 09:12

용인시 거주 29세 남성 확진
 동거인은 코로나19 음성판정



대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게이클럽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실시간 인기기사

1. 지난 '더 강해지겠다...'...신예메
2. "곧 망한다" 두마에...우 지방廳
3. '엑스 스캔'을 발견 정원석 2개
4. 폭기라는 사실 숨긴 남편...1년
5. [속보] 서울 성수고 2학년 확진
6. '포도1봉' 예죽 프로그램 사용후
7. 주식으로 '뚝든'별고 인증한 직!

**● 믿음·신뢰·정직·임
 척추 관절 비수술**



강남초이스 정형
 전통의 6.7번 출구 | 02)539-
 이 시작 관심정보서
 출처: XX신문, 인터넷기사, 2020.7.18. 최종 방문

-6-

I. 문제 제기

중앙일보
"확진자 다녀갔다" 3시간 공지실수에 끝내 문 닫은 돈가스가게

이은지 입력 2020.07.07. 15:47 수정 2020.07.07. 15:54 댓글 313개

돈가스 광안점에 확진자 다녀갔는데 남천점으로 잘못 개재
부산시 3시간 뒤에서야 수경·사과문 게제
남천점 점포 주인 지난달 30일 폐업·국가배상 막막

부산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간 부산 동래구 동래일면에 '부산시 클린존' 1호점 인증마크를 부착했다. 송봉근 기자

출처: 중앙일보, 인터넷기사, 2020.7.18, 최종 방문 (<https://news.v.daum.net/v/20200707154724273>)

-7-

I. 문제 제기

-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이 적절한가?
- 확진자의 노출,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방문장소의 공개는 적절한가?
- 방문장소의 영업 손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 글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등 근거법령, 집행,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위헌 또는 위법 여부의 판단보다는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에 집중

-8-

II. 법제 현황과 분석 1.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개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본조신설 2015. 7. 6.]

-9-

II. 법제 현황과 분석 1.근거 법령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본조신설 2016. 1. 7.]

-10-

II. 법제 현황과 분석 2. 제한의 목적

1. 동선 공개의 목적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접촉자에게 스스로 접촉 가능성을 인지해 생명과 건강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출처: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93910>)

-11-

II. 법제 현황과 분석 2. 제한의 목적

2. 관련 기본권

(1) 시민의 알 권리?

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목 개정 2015. 7. 6.]

(2) 헌법 근거 탐색의 필요성과 함의

알 권리는 수단적 권리, 예를 들어, 경찰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이 수사실의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이라고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알 권리를 청구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 알 권리는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하는 알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에 근거한 알 권리.
 동선 공개에서 문제삼는 알 권리가 지향하는 바는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따라서 제한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따라서 알 권리의 내용, 범위도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알 권리와 달리 평가되어야.

이에 따라 “투명성을 위해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명제에서 ‘정보’의 범위에 확진자 동선이라는 정보는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

이 정보는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알려라”라는 명제에서 ‘정보’의 범위에 속하는 것임. 여기에 속하는 정보는 이 범위를 넘은 정보를 알리는 것은 다른 시민의 기분권을 침해하고, 특정 종교 혐오, 특정 국가 출신 혐오, 특정 성향 혐오 등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노리를 야기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12-

II. 법제 현황과 분석 3. 제한되는 기본권

(1) 프라이버시?

(가) 이익과 권리

(나) 프라이버시권과 정보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은 1880년 미국의 Thomas Cooley 판사가 민법의 손해배상(Tort)에 관한 저서에서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라는 의미로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1890년 Warren과 Brandeis가 이를 보다 상세히 분석한 한 논문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진보된 문명세계에서 살고 있는 개인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는 주장에서 기원(이상 국가인권위원회, 2013, 14-15쪽).

현대에 와서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vacy).

그러나 프라이버시권, 정보 프라이버시권은 미국 내에서도 불확정성을 가진 모호한 개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해석론에서 잊혀진 프라이버시권을 다시 소환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헌법적 근거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informational autonomy)', 개인정보통제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에서 구하는 견해가 주장(김종철, 2001)되었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005년 이러한 견해를 취함(헌재 2005.5.26. 99헌마 513. 2004헌마190(병합)). 나이가 학계에서는 헌법 개정에 즈음하여 개인정보권을 신설하자는 제안(예를 들어, 김배원, 2006, 정필운, 2018 등).

(3) 개인정보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재산적 측면 등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개인정보권이라는 개념 사용을 제안

-13-

II. 법제 현황과 분석 3. 제한되는 기본권

(4)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4-

II. 법제 현황과 분석 4. 제한의 정당성 판단

(1) 심사기준의 설정

가. 기본권 상충 이론의 적용: 입법단계에서 입법자에 대한 이론
법익형량방법,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

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사법단계에서 기본권 침해 심사 기준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가) 목적으로한 심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 (나) 형식으로한 심사: 법률,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 (다) 방법으로한 심사: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

-15-

II. 법제 현황과 분석 4. 제한의 정당성 판단

(2) 목적으로한 심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가) 동선 공개의 목적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접촉자에게 스스로 접촉 가능성을 인지해 생명과 건강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확진자에 대한 응보와 특별예방, 일반인에 대한 일반예방?

(나) 목적의 정당성 판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에 해당하여 목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있음

-16-

II. 법제 현황과 분석 4. 제한의 정당성 판단

(3) 형식요건 심사: 법률,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가) 법률과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정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와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 [본조신설 2015.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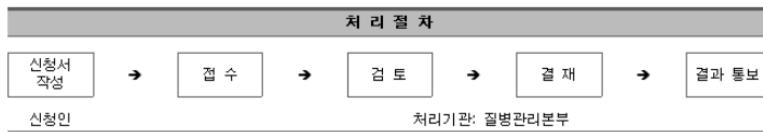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본조신설 2016. 1. 7.]

-17-

II. 법제 현황과 분석 4. 제한의 정당성 판단

(3) 형식요건 심사: 법률,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나) 평가

첫째, 법 제34조의2 제3항 위임을 상당부분 이행하지 않은 위법 상태.

어떤 절차에 의하여 심사하는지, 언제까지 심사해서 어떻게 통보하는지 알 수 없음.

둘째, 제1항, 제3항이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으로서 위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협행 시행규칙 중 제27조의4 수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서식은 제외), 시행규칙에서는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18-

II. 법제 현황과 분석 4. 제한의 정당성 판단

(4) 방법요건 심사: 과잉금지원칙

(가) 수단의 적합성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접촉자에게 스스로 접촉 가능성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방법 1. 동선공개

방법 2. 장소기반으로 접촉 가능성 있는 자 파악 후 개별 통보-위치정보 이용

방법 3. 사람기반으로 접촉 가능성 있는 자 파악 후 개별 통보-블루투스 비콘 이용

세 가지 방법 모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

-19-

II. 법제 현황과 분석 4. 제한의 정당성 판단

(4) 방법요건 심사: 과잉금지원칙

(나) 피해의 최소성

동선 공개가 확진자의 개인정보권, 관련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야

방법 1. 동선공개의 장단점

- 정보가 널리 공개되므로 효과 확실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
- 특정시간에 특정장소 출입한자의 정보를 새로 생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상대적 장점
- 기술의존적이지 않아 불확실성 없다는 장점
- 확진자의 개인정보권, 관련자의 영업의 자유 등 침해 우려
- 일반적으로 공개되므로 관심없는 자에 대한 인지 가능성 희박

-20-

II. 법제 현황과 분석 4. 제한의 정당성 판단

(4) 방법요건 심사: 과잉금지원칙

(나) 피해의 최소성

방법 2. 장소기반으로 접촉 가능성 있는 자 파악 후 개별 통보-위치정보 이용의 장단점

-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최대 장점
-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므로 접촉 가능성 더 확실하게 인지 가능
- 특정시간에 특정장소 출입한자의 정보를 새로 생성하여 관리하는 것의 문제점
-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므로 검사 요구자 급증 우려
- 기술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단점

-21-

II. 법제 현황과 분석 4. 제한의 정당성 판단

(4) 방법요건 심사: 과잉금지원칙

(나) 피해의 최소성

방법 3. 사람기반으로 접촉 가능성 있는 자 파악 후 개별 통보-블루투스 비콘 이용의 장단점

-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최대 장점
-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므로 접촉 가능성 더 확실하게 인지 가능
- 특정시간에 특정장소 출입한자의 정보를 새로 생성하여 관리하는 것의 문제점
-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므로 검사 요구자 급증 우려
- 기술적으로 가장 불완전하다는 단점

-22-

II. 법제 현황과 분석 4. 제한의 정당성 판단

(4) 방법요건 심사: 과잉금지원칙

(나) 피해의 최소성

-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확진자 개인정보권, 관련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최소로 침해하는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판단하기 곤란함
- 각 방법은 각 방법대로 접촉 가능자의 인지, 통보 또는 공개를 통한 알 권리 총족, 이를 통한 본래 목적 달성을 가능성 등에서 각기 장단점이 존재함
- 이렇게 보았을 때 동선 공개 방법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양한 방법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분석과 해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23-

II. 법제 현황과 분석 4. 제한의 정당성 판단

(4) 방법요건 심사: 과잉금지원칙

(다) 법익의 균형성

- 동선 공개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접촉자의 생명, 안전(건강)을 위한 알 권리라는 공공복리가 확진자 개인정보권, 관련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사익을 비교하였을 때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큰지 판단.
- 동선공개로 인하여 개인이 입는 불이익은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 확진자가 들른 장소가 영업장인 경우 영업하는 자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 가액이 하락할 염려가 있는 것 등임. 법은 이를 막기 위하여 정보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만으로 법익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엔 충분치 않음. 따라서 개선이 필요.
- 법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정보 공개의 범위를 좀 더 좁히고, 방법을 개선하고, 손실보상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하여야.

-24-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보공개 사항 좀 더 좁히고, 법률에 규정

(1) 알 권리의 목적에 충실한 공개 범위 설정

- 가. 이를 위해서 이미 지침 개정하여 성별, 연령, 국적, 종교, 거주지 등 원칙적으로 공개 제한
- 나. 그러나 다른 통로로 여전히 성별, 연령, 거주지 등 공개되며, 동선 공개 정보와 결합하여 보도됨
- 다. 확진자의 연번(종로구 XX번)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키값의 역할을 하는 반면, 일반 시민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해야

(2) 동선 공개와 함께 공개 목적 동시 기재하여 남용하지 않도록 계도

(3) 공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

(4) 개별 사례에서 공개 여부 판단 위한 법전문가의 보강

공개 항목을 정하더라도 개별 사례에서 개별 항목 공개에 대한 판단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항목 공개 판단을 위한 법전문가를 방역당국에 보강 권고

-25-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공개 방법의 개선

(1) 개인별동선 공개가 아니라 합산 공개 방법으로

- 가. 무엇보다 현재 확진자의 연번과 시간대 순으로 동선 공개하는 방법은 개인 특정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전체 동선을 모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법과 같이 근본적인 공개 방법 개선을 제안함
- 나. 또한 자치구별로 하는 동선 공개 방식에서 생활단위인 광역구역별, 지도형태인 경우 전국 단일의 동선 공개 방식을 제안함

(2) 합산 공개 방법과 개별 접촉자 통지 방식의 병행

이미 설명한 것처럼 동선 공개 방법과 개별 접촉자 통지 방식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행 가능하므로, 개별 접촉자 통지 방식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26-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손실보상의 근거 마련 검토, 그 기준 마련과 집행

(1) 손실보상 가능성 검토와 근거 규정 마련

적법한 정보 공개에 의하여 관련자의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 검토하고, 법률에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손실보상 기준 마련과 집행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동선 공개와 관련한 시민 저항 최소화

(3) 손해배상 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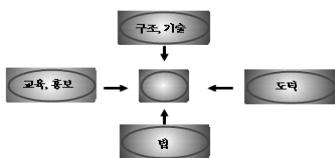
공무원의 동선 공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례를 정리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절차를 안내하여 동선 공개와 관련한 시민 저항 최소화

-27-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 병행

(1) 기술법 영역에서 법의 기능과 한계



(2) 투명성 보고서의 발간*

투명성 보고서 발간과 같은 노력 병행 필요

* 네이버 이진규 이사님 제안

(3) 교육과 홍보의 병행

공개의 목적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언론과 다른 시민이 목적 외 기사, 댓글 작성하지 않도록 유도 (상당 기간 관찰 후 경과, 폐해 검토 후 법적 수단 동원 검토)

-28-

IV. 결 론

1.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는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있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선진적인 입법
2. 그러나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 권리의 보장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법령 일부 개선 필요
3. 법령에 바탕한 집행 과정에서도 일부 개선 필요
4. 특히 방역당국의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언론 기사, 댓글 등에서 확진자에 대한 응보와 특별예방, 일반인에 대한 일반예방적으로 남용되거나 호기심 자극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곤란
5. 한편, 동선 공개 외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한 기술동향 조사, 좀 더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정책 수정 가능성 열어 둘 것을 권고

-29-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wjung@knue.ac.kr

【제2주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정보제공요청의 헌법적 문제

김가연 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

KING King Seoul
2분 · Q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 관련 사실 공유

금일 확진 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5월 2일 00:20~03:00 사이 KING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여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해당 확진 환자는 5월 2일 방문 후 오늘(5월 6일) 관계 당국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진자가 이태원을 방문한 동선에 KING이 포함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받았습니다.

영업일 모두 매일 클럽 내부를 자체적으로 방역 하였으며, 입장시 발열체크 및 방역복 착용(발열 일부 / 해외 방문여력을 상세 정보), 재 입장 시 필수소독 절차 및 마스크 착용 확인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확진자 동선에 노출되어 해당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된 소식이 있을 경우 KING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통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해당 확진자에 대한 추적성 소문 및 신상 공개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KING은 관계 기관의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금일 관계기관의 긴급 방역 절차 정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 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KING팀 드립
4개 좋아요 댓글 달기

기지국은 알고 있다...이동사, '이태원 접촉자'
이름 · 전화번호 · 집주소 제출

[종합일보] 접책 2020.05.12 11:58 ~ 수첩 2020.05.12 19:53

● 김현진 기자

이동통신사 3사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 당국에 주변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일괄 제공했다. 이동3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한 통신 정보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주변 17개 기지국에 접속한 유대인과 통신 기록이다. 하지만 클럽 방문과 거리가 있는 인근 상점이나 도로를 이용한 사람들의 통신기록까지 모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날 이태원서 현드폰 풀고 있는 사람은 다 찾았다.'

1만905명, 서울 이태원 소재 카페·클럽·헬스장·HIM 등 5개 업소를 중심으로 인근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에 '30분 이상' 접속했는지 여부를 보유자들의 규모다. 코로나19 중앙시고수습본부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전 KTS텔레콤·LG유플러스·로부티 요구에 제출 받은 명단이다.

전날 이동사 2곳이 서울시에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전달한 데 이어 12일 나머지 한 곳도 자료를 건넸다. 통상 코로나19 감염환자·의심자 주체 시 경찰이 자료 요구에 나서는 것과 달랐다. 경찰 도중 없이도 기지국 접속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다.

감염병 의심환자 아니어도 신상자료 확보 할 수 있어

서울시도 확진환자나 의심자 주체를 위해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을 제거하고자 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시장·군수·구청장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위치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1만905명에 달하는 인원이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검사 대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상상 이태원을 찾 주변에 있던 사람 모두를 추적한 것이다.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7월 29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오픈넷,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함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 5월 18일 코로나 19 대응을 명목으로 이태원을 방문한 약 1만 명의 사람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처리한 행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헌법소원 청구인

- 2020년 4월 말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 인근 소재 식당을 방문
- 2020년 5월 18일 서울시로부터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
 - 청구인을 포함한 2명은 문자를 받았지만 다른 2명은 문자를 받지 않음
- 청구인과 그 친구들은 5월 2일 새벽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클럽 또는 인근 클럽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방문한 식당은 클럽들과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진 장소였음
-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음성판정 통보받음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제한되는 기본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특정 기지국에 저장된 청구인의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가 피청구인들에 의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처리됨

(2) 통신의 자유

- 특정 기지국에 저장된 청구인의 통신이용 내역 등이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피청구인들에게 수집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2020. 4. 29.경 이태원을 방문한 사실을 피청구인들에게 공개당함

(4)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시민들의 특정 지역에 방문할 자유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정보제공요청 및 정보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 · 단체 · 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정보제공요청 및 정보확인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 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 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의 위헌성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 기지국 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통해 감염병의 전파가 효율적으로 방지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나 통계를 찾을 수 없음

(3) 침해의 최소성

- 다른 방법으로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전파 방지가 어려운 경우(보충성)을 기지국 정보의 수집 등 처리를 허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 법원의 허가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기지국 정보의 수집 등 처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방안 등이 존재함

(4) 법익의 균형성

- 청구인의 기본권과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의 형량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의 위헌성

영장주의의 위배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기본권 침해가 형사절차에 의한 것인든, 행정절차에 의한 것인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행정조사(行政調查)
 - 행정기관이 사인(私人)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입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작용
 - 원칙적으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긴급한 상황 등에서 영장 발부를 기다린다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 경찰이 위치정보 취득의 매개 역할, 동선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감염병 법상 범죄이므로 형사책임 추급이 가능. 따라서 영장주의 적용 필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의 위헌성

국제인권기준

- 정보수집은 정보수집에 이해관계를 가진 보건당국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선출직인 기초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짐. 이와 같은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지지 않도록 통제할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음
-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강제수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은 명백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kkim@opennet.or.kr

8kkim8@gmail.com



【제3주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확진환자 동선공개와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

김 민 섭**

- I. 들어가며
- II. 확진환자 동선 공개 관련 법령, 인권 지침 등
- III. 인권 보호 시각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 검토
- IV. 나가며

I. 들어가며

코로나19(COVID-19)의 19라는 숫자는 모두가 알다시피 연도를 의미한다. 작년 2019년에 발생한 이 신종 감염병은 해를 넘겨 2020년 8월이 되도록 그 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경제와 사회 및 모든 인류의 활동에 크나큰 폐해를 미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 19는 그 질병 자체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권 보호 체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까지도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확진환자나 감염 의심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추적과 감시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확진 환자 동선 공개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어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지조차 인식이 희미하나, 애당초 주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식의 정보 공개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와 인권 쟁점

* 본 발제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 발제문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법학박사

이 실로 다대한 도전과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본고에서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공개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 관령법령과 인권 지침 등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을 통하여 대응한 사례를 소개한 뒤 향후의 개선과제를 간략히 제언해보고자 한다.

II. 확진환자 동선 공개 관련 법령, 인권 지침 등

1. 관련 법령 및 규범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진환자에 대한 동선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하고 실무적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에서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를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가. 「감염병예방법」 상 동선공개 주요 내용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감염병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규정한다. 같은 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¹⁾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

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는 원칙적으로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으로 구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의신청 사유로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등 2가지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절차를 규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세부적 절차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34호) 제27조의4는 「감염병예방법」의 위임을 받아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는 2015. 7. 6. 해당 조문이 신설되었고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던 와중인 2020. 3. 4. 개정을 거쳤다. 그 연혁과 개정내용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면, 조문 신설 시에는 단지 “감염병 확산 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나 개정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로 공개 조건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조문 신설 시에는 별도의 공개 방법은 적

할 수 있도록 위기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시에는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이라 하여 그 방법 역시 구체화하였다.

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주요 내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확진환자 정보 공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이하 “정보공개 안내”라 함)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정보공개 안내」는 2020. 8. 현재 총 3번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그 중 가장 최신인 2020. 6. 30. 발표한 제3판을 중심으로 보고 필요시 2020. 4. 12. 발표한 제2판의 내용을 같이 본다.

먼저 「정보공개 안내」의 발표 배경 및 성격에 대해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발생”이 있다고 전제하고, “지자체의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는 자체 판단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²⁾을 해소하기 위해 권고 성격의 안내”를 수립 배포한다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1) 정보공개 대상

정보공개의 대상은 ‘감염병환자’로서, 즉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가 정하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2) 정보공개 기간

정보공개의 기간은 “정보 확인 시부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이며,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하도록 한다.

²⁾ 「정보공개 안내」 제2판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라 설명하고 있고, 제3판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이라 하여 확진환자 및 공개된 영업장 등의 경제적 피해 까지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3) 공개범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개 범위를 보면, 우선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이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제2판에서는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을 정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후술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0. 3. 9.)³⁾을 말한다.

이 중에서 ‘거주지’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직장명’의 경우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개 범위가 되는 시간은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된 경우) 코로나19의 경우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며, 반면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공개 한다. 공개 범위가 되는 장소 및 이동수단에 대해 보면,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하는데, 이는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을 공개하고, 상호의 경우에도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를 확인한다고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특히 제3판에서는 이전과 달리,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하도록 한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이경경로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³⁾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0. 3. 9.

2. 코로나19와 인권 관련 보고서, 지침 등

코로나19는 주지하다시피 범지구적인 인권 위기이기도 하며, 이에 국외의 주요 인권기구, 국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인권 보고서, 지침, 성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 공개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가.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

유엔 사무총장실은 2020. 4. 23.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⁴⁾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인권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며,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대응은 전염병 퇴치, 보편적 의료서비스, 인간 존엄성의 보장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제한다. 세계는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고, 예외적인 상황과 생명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각 국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적시한다. 인권법은 국가의 비상상황에서 특정 인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코비드-19는 공중보건 목적으로 인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의 규모와 심각성에 이르렀다. 동 보고서는 코비드-19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있어서 국가의 자유를 제한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국가들의 위기 대응에 허점이 있을 가능성을 알려주고 인권에 주목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을 설명하기 위해 발간되었다고 설명한다.

동 보고서는 COVID-19 대응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인권은 생명권 및 생명보호의 의무, 건강권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권리, 이동의 자유에 대한 핵심 제약의 3가지라고 설명하고, 이 중 이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국제법은 안보나 보건 비상 상황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이동의 자유에 특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한은 철저하게 이러한 목적에 따라 그 목적

⁴⁾ United Nations(2020), 「COVID-19 and Human Rights - We are all in this together」.
이하 국문 번역본은, 국가인권위원회(2020), 「COVID-19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
pp. 1~30.에 따름.

에 적합한 수준으로 (비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검사 및 추적, 선별적 격리조치는 무차별적인 제한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동 보고서는 확진환자의 동선 추적과 공개와 관련하여, 긴급 및 안보 규제 또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한 긴급 대응 및 규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기에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긴급 대응 기간 동안 지금은 정당화되는 사항들이 위기 이후에도 표준화가 될 수도 있으며⁵⁾,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이러한 강력한 기술은 차별 및 개인 사생활 침해를 유발시키며 전염병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람들 또는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관련 대책은 유의미한 데이터 보호 장치를 반영해야 하고 합법적이고 불가피하며, 균등해야 하고, 기간 제한이 있어야 타당한 공중 보건을 목표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 COVID-19 인권보호지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OHCHR)는 2020. 4. 27. 「COVID-19 인권보호지침」⁶⁾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코비드-19는 사회, 정부,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시험이며,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가끔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 하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존중은 이 전염병에 대한 공중보건 대응 및 회복을 위한 성공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중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긴급 조치를 허락하

⁵⁾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임상데이터를 향후에도 보다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메디게이트 뉴스, “코로나19 임상데이터 활용 필요성, 민감정보 결합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2020. 5. 10.

⁶⁾ UN OHCHR(2020), 「COVID-19 Guidance」.

이하 국문 번역본은, 국가인권위원회(2020), 前掲 모음집, pp. 31~45.에 따름.

고 있으나, 그럼에도 긴급 조치들은 검토된 위험에 비례해야 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것은 특정 대상 및 기간이 있어야 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침해 최소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 모니터링은 개인의 행동과 이동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그러한 감시와 모니터링은 공중보건이라는 특정 목적과 특별히 연관되어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듯이 그 기간과 범위 또한 제한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나 기업들이 공중 보건 위기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경한 보호 장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다.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2020. 6. 11.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⁷⁾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이번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사실은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과 위기가 모두에게 평등하지는 않으며, 재난 상황에서 평소 목소리와 힘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확인되지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가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코로나19와 확진자 동선공개 등 정보인권에 관련한 언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기의 감시체계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제약을 최소화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조치를 수행하는 목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동 가이드라인은 확진환자의 동선공개에 대해 1)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⁷⁾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2020),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록 확진자별 동선 대신 확진환자들이 방문한 시간과 장소만을 데이터화하여 공개할 것, 2)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해야 할 것 즉 확진자의 관계나 신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3)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될 것, 4)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보완이 필요할 것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⁸⁾

III. 인권 보호 시각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 검토

1. 개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 초부터 주요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등 발표 주체별로 상이한 점⁹⁾, 정보 공개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노출된다는 점¹⁰⁾ 등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20. 4. 초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손목밴드 착용을 도입한다는 발표¹¹⁾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코로나19로 인한 혐오 차별 확산과 같이 인권 침해우려가 확산되는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정보인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 보호의 시각에서 확진환자의 과도한 동선공개 문제, 손목밴드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위치추적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2020. 3. 9.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

8)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2020), 前掲 가이드라인, pp. 42~45.

9) 연합뉴스, “확진자 동선 공개수준 자치구별 제각각... 시민들 혼란”, 2020. 3. 1.

국민일보, “직장·주소까지.. 지역마다 제멋대로 확진자 정보공개”, 2020. 3. 4.

10) 뉴시스, “이 시국에 거길 갔네.. 확진자 동선 공개 부작용 속출”, 2020. 2. 27.

한국경제, “왜 처제가 확진? 딱 봐도 불륜이네 동선 공개에 우는 확진자들”, 2020. 2. 28.

아시아경제, “동선따라 사생활 인성평가.. 코로나19 확진자들 두 번 운다”, 2020. 3. 2.

11) MBN, “정부 자가격리자 이탈방지 위해 손목밴드 검토 중”, 2020. 4. 7.

권위원장 성명”(이하 “확진환자 동선공개 인권위 성명”이라 함) 및 2020. 4. 9. “코로나19 위기, 우리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험대, 손목밴드 도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이하 “손목밴드 인권위 성명”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아래에서는 상기 2 건의 성명을 중심으로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의 동선 공개나 위치추적에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인권위 성명 주요 내용

가. 인권위 업무와 권한

인권위 성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인권위의 업무와 권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며¹²⁾ 주요 업무로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있다.¹³⁾ 인권위의 회의는 크게 전원위원회(위원장 포함 인권위원 11명 전원),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상임위원), 소위원회(상임위원 및 위원), 특별위원회(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 등이 있는데¹⁴⁾, 인권위 업무 중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그 중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등의 경우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¹⁵⁾

이에 비해 이른바 '위원회 성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요한 사회적 인권 현안에 대해 시급히 인권위의 입장을 공표할 필요성이 있고 이미 기존 심의·의결을 거친 결정들이 존재하여 그러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사안 등의 경우에 발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확진환자 동선공개 인권 위 성명 및 손목밴드 인권위 성명 등은 이미 기존에 정보인권 보호에 관한 위원회의 확립된 결정들이 존재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확진환자 사생활 침해 문제 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기적 시급성, 몇몇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동선이 공개된 확진환자에 대한 혐오나 조롱이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¹⁶⁾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상임위원회 의결 절차 등이 없이 인권위 성명으로 추진하였다.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 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4호)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1. 전원위원회
2. 상임위원회
3. 소위원회
4. 특별위원회.

15)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4호)

제20조(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제16조(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법 제19조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10. 상임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6) 인권위에서 상기 성명 발표 준비를 위해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자체 모니터링해본 결과, 동선이 공개된 확진환자에 대한 조롱, 모욕, 신상털이 등이 다수 게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일간베스트(ilbe.com), “부산 확진녀 레전드 떴다”, 에펨코리아(fmkkorea.com), “청주 20대 여성 확진자 이상한 행적” 등의 게시물 등이 확인되었다.

나. 확진환자 동선공개 인권위 성명 주요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 공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권위는 2020. 3. 9. ‘확진환자 동선공개 인권위 성명’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고, 다만 “실제로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이 있음을 우려하였다. “모든 확진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¹⁷⁾도 간과 할 수 없”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4. 12. 개정 발표한 「정보공개 안내」 제2판에서 상기 인권위 성명을 통한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보다 세부적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하여 공개할 것”, “동선 상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할 것” 등의 기준을 반영하였다.

홍성수(2020)¹⁸⁾는 인권과 공익의 문제는 한쪽을 택하면 한쪽이 반드시 희생되어

17) SBS, “감염만큼 신상털이 두렵다.. 확진자 정보공개 적정선은”, 2020. 2. 24.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황별 두려움(5점 만점)을 묻는 문항에서 '무증상 감염되는 것'(3.17점),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신고하지 않은 이가 주변에 있는 것'(3.1점) 등 감염 관련된 항목보다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추가 피해'(3.52점)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유명순 교수는 “확진자에게 탓을 돌리고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가 부메랑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을 가중한다”고 지적함.

18) 한겨례, “[시민편집인의 눈] 인권을 위한 공익, 공익을 위한 인권 / 홍성수”, 2020. 4. 16.

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통치자들은 인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신중한 판단과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다고 지적하면서, ‘확진환자 동선공개 인권위 성명’을 예로 들어 인권위가 확진자의 2차 피해를 경고하면서도 고매한 원칙론만 강변한 게 아니라 방역에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공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점 또한 강조했고, 며칠 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진전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음으로써 이에 화답하는 등 인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한 사려 깊은 조정 과정을 실증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2020)¹⁹⁾는 확진환자 동선 공개 문제에 대해, 이러한 확진자 동선 공개는 지역사회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와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공존함을 얘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 2020. 3. 9. ‘확진환자 동선공개 인권위 성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지자체별로 정보 공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며, 확진자의 동선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확진자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여러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를 뮤어 시간대별로 공개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생활 침해도 줄이는 방안, 감염병 방역 당국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협의하여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 공개 등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 손목밴드 인권위 성명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²⁰⁾ 자가격리자에 대

19) 국회입법조사처(2020),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pp. 81~83.

20)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 을 할 수 있다.

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 앱은 증상에 대한 자가진단 기능 외에도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경고음을 울려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일부 자가격리자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거나 혹은 위치정보 기능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앱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는 2020. 4. 7.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일명 ‘손목밴드’ 혹은 ‘안심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²¹⁾ 참고로 정부가 언급한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스마트폰과 적정거리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밴드가 훼손·절단될 경우 스마트폰에서 보건 당국으로 신호가 전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신체에 부착하는 위치추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²²⁾되었으며, 이에 정부 측은 안심밴드 도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착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²³⁾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인권위는 자체 검토를 거쳐 정부가 추진 예정인 손목밴드 혹은 안심밴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부적 검토를 거쳐 2020. 4. 9. ‘손목밴드 인권위 성명’을 발표하였다. 상기 성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권위는 우선 “정부와 의료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공동체 의식 없이 자가격리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다만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21) MBN, “정부 자가격리자 이탈방지 위해 손목밴드 검토 중”, 2020.. 4. 7.

22) 머니투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검토에 인권침해 논란”, 2020. 4. 7.

KBS, “인권시민단체들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도입추진 안돼.. 인권침해 우려”, 2020. 4. 10.

23) 파이낸셜뉴스, “자가격리 위반자 손목밴드 찬다.. 동의 후 착용”, 2020. 4. 11.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인권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 사표현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인권위는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본 바 없는 미증유의 위기이나, 이는 또한 우리 사회가 지난 인권과 법치주의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이며,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한 인권적 가치를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번 허물어버린다면, 이를 다시 쌓아올리는 것은 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념”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인권위가 특히 상기 성명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대해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이른바 동의 만능주의²⁴⁾가 팽배한 점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코로나19 감염의심으로 법률에 따른 강제적 조치인 자가격리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손목밴드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해설전문 42항에서 “정보주체가 진정으로 또는 자유 선택으로 동의하지 않았거나, 불이익 없이 동의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는 자유롭게 제공된 것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소결

감염병 환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동선정보 공개제도의 기본적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2020. 3. 28. 보도²⁵⁾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감염병 확산을 위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일부 주나 카운티에서는

²⁴⁾ 보안뉴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 최우선 개선사항 4가지”, 2019. 6. 30.

²⁵⁾ The New York Times, “How Much Should the Public Know About Who Has the Coronavirus?”, 2020. 3. 28.

(확진환자 동선공개는 커녕) 미국 개인의료정보 보호법(HIPAA)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만의 확진환자 공개 조치의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인해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만의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인구 2천만명이 넘는 대만의 확진환자가 298명에 그치는 동안 인구가 대만의 1/10에 불과한 미국 뉴욕시 퀸즈 구에서만 무려 1만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문제가 있는 등 이는 매우 다차원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는 문제임이 명확하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동선정보 공개제도는 2015년 이른바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환자들의 동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도입된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시민들은 사생활이 노출되는 동선공개를 두려워하면서도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²⁶⁾ 결국 사생활 노출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면서 감염병 확산과 예방도 확보할 수 있는 세밀한 공개 기준을 계속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제도가 “무분별한 개인의 식별을 초래하여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우려”²⁷⁾에 대해서는 이미 이태원 성소수자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종합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을 같이 공개해오고 있으나, 「감염병예방법」 상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 동선공개의 권한이 있는지 등의 쟁점²⁸⁾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은 정보공개의 시행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가 아니라 같은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근거를 찾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진환자의 구체적인 동선 공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는 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 할 가능성, 일률적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개 남용을 초

26) 한겨레, “[기고] 확진자 동선공개 달리해야 / 서홍관”, 2020. 3. 19.

27) 서채완(2020), “감염병 위기 속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자료집, p. 53.

28) 정보 공개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의 지적이 있어왔다.

중앙일보, “질본 원칙 깨고 확진자 동선 공개.. 주민 알권리 내세운 지자체”, 2020. 2. 7.

래할 우려”²⁹⁾를 초래할 수도 있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권한을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보다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외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 혹은 안심밴드의 적절성과 만약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 등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IV. 나가며

인권위는 상기 2개 성명 외에도 혐오차별 근절 위원장 성명(2020. 2. 5.), 정신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 관련 위원장 성명(2020. 3. 3.) 등을 발표하여 코로나19와 인권 문제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특별대응팀’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되는 전반적 인권문제와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인권 논란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내재하고 있던 제반 인권적 역량과 취약점들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혐오 차별이나 소수자 문제, 특정 지역민 및 외국인 차별, 무엇보다 개인정보 등 정보처리의 취약성은 코로나19가 아니라더도 그간 인권 시민사회단체들과 인권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주제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문제로 야기되는 인권 문제의 해답은 결국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 성명, 국회 입법조사처,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적한 취지와 같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기본권 제한의 법적 근거, 비례성 확보, 차별금지 등 제반 원칙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구체적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열린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실효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감히 제언하여 본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 성명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29) 서채완(2020), 前揭 논문, p. 54.

【종합토론】

종합토론문

남정아*

뜻깊고 귀한 자리에 토론의 기회를 주신 이원우 회장님과 총무이사님, 기획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례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표현될 정도로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비상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각 국가의 위기 대응 방식과 생명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번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제3차 포럼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이라는 주제로 여러 자료를 통해 공부하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발제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코로나 19사태 후 혼란스런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사태발생 초기에 벌어졌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등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는 감염병예방법상 확진자 동선공개와 인권문제 및 공법이론적 검토를 해주시고 동법률의 제76조의 2의 위헌성에 대해 핵심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의 감염병 예방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저는 토론자라기 보다는 배우는 입장에서 공부하며 궁금했던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겠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

1. 감염병 예방법 제34조의2 정보공개와 법률유보원칙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조 제4항에는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34호, 2020. 6. 4. 개정)은 제27조의4 제1항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제1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동법 제34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였으나,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이에 관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규칙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공개 정보의 범위는 질병관리본부장에 결정되고¹⁾,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된 안내문은 권고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각 지자체를 구속하는 힘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도 각 지자체별로 정보공개 범위정도가 다릅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및 동선공개 등 정보공개 범위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법규명령에 직접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여부가 문제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¹⁾ 이는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직접 정하지 않고 다시 복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²⁾의 위헌성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에 대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의 주체가 타인에게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알린다면 언제,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전달할 것인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헌법상 보장되는 독자적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습니다³⁾.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개인건강정보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확진자 본인 또는 확진의심자 등의 신상정보, 이동경로, 접촉자에 관한 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에는 정보주체가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열람하고, 정보처리기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의 정정, 차단, 삭제, 처리정지 또는 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분석하거나 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중에게 공개하는 등의 공권력 작용을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2) 감염병환자 개인정보 공개의 정당성 부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정보공개의 조치를 통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빠른속도로 확산되는 긴급한 상황일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발생, 관리 조치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

2)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현재 2005.7.21. 2003현마282등

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 2의 제1항과 제2항의 위헌성 검토에서 이밖에도 여기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위임의 방식과 관련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에 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염병 확진자 또는 의심자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제공 요청을 하고 제3자에게 그 요청에 따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제한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개인위치정보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헌법 제75조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2016년 1월 신설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2020년 6월에 신설된 감염병 예방법 제32조의 3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⁴⁾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4호는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어떤 개인위치정보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될 수 있을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제1항 제2호⁵⁾등과 모범에서 직접 규정한 예를 볼 때 감염병 환자나 의심

4)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서는 법 제76조의2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제1호), 교통 카드 사용명세(제2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제3호)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2020. 6. 2.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이외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제2항).

5)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

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법에 직접 직접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안심밴드 도입의 문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음에도 해당 앱의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정부는 일면 ‘손목밴드’ 또는 ‘안심밴드’(이하 안심밴드) 도입의 검토를 거쳐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안심밴드의 도입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안심밴드를 거절할 경우 시설격리 및 비용의 전액부담이라는 부분을 볼 때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발제문의 인권위 성명에 따르면 우선 “정부와 의료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공동체 의식 없이 자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격리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인권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표현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고 하는데 동의를 얻어 부착하는 안심밴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고 거절할 경우 시설격리로 이어지고 경비부담을 지우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동의가 맞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있을 때 이 안심밴드의 도입 효과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 도입된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감염 우려가 되는 시설⁶⁾에 대해 도입되는 이 시스템에서 동의가 전제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안심밴드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그 ‘동의’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2020년 8월 6일 현재 1,879만5,884명이고, 국가별 확진자 수는 미국(497만3741명)이 가장 많고 브라질(286만2761명), 인도(196만7700명), 러시아(87만1894명), 남아프리카공화국(52만9877명)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감염병 대응의 전세계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규범화적으로 보장하며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 초기에 정보공개 등에 관한 언론보도를 통해 확진자자들의 동선이 공개⁷⁾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공개 정도가 심한 것들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성별, 나이, 학교, 동선, 종교, 직업 등 까지 공개

6) 집단운동시설(줌바, 스피닝, 태보),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등 8곳이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되면서 당사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확진환자가 아닌 비난과 악플에 시달리는 낙인으로써 심각한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막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시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초한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아직 배우는 입장이라 여쭙고 싶은 부분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제자님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문

장 여 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및 그 집행의 개선을 제언하는 발제자들의 지적에 공감함.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따른 정보(동선)공개의 경우, 피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음. 법률에서 공개 목적을 명시하고 공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선이 바람직함. 합산 공개 등 덜 침해적인 대안적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요청 및 정보확인의 경우, 수단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음.
-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지구적 위기 속에서 모든 국가(및 지자체)의 대응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 속에 실시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른바 K방역의 3T 정책 중 확진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추적(trace)과 정보 공개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이 유예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에서는 언제가 그 종료시점인지 모호함. 국가인권기구의 적극적인 규범적 역할이 필요함.

○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보론

- 특정되지 않은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정보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2항의 '위치정보'라고 볼수 없음.
 - 수사기관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특정기지국에 접속한 다수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건(현재 2018.6.28. 결정, 2012헌마538 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법불합치 사건, 일명 ‘기지국수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및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에 준하는 자료를 그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통화내역 자료에 해당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 가목 내지 라목이 제공된 사건으로 판단함.

- 또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위치정보 또한 특정 물건 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의미하며,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통신내역으로부터 다수인을 역으로 추론하는 정보는 위치정보라고 볼수 없음.
- 특정되지 않은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정보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의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라고 볼수 없음.
-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정보가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라 할수 있을지 의문.
- 확진환자가 이태원 5개 거리를 방문한 5.2. 자정~04시가 아닌 4. 24.~5. 6. 자정~05시 사이에 이태원 인근 17개 기지국에 접속한 이통3사의 가입자 1만 905명이 모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량 정보제공, 또는 대량 감시의 문제

- 이태원 역학조사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클릭 한 번에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에 연계된 정보를 신청해 받을수 있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회사 보유 개인정보를 상시적이고 방대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물적 기반임. 그러나 그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법적인 근거¹⁾ 및 사회적 통제가 부재함. ‘소관 업무’이지만 불가피한가? 사실상 자동화된 행정에서 적법 절차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은?

¹⁾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4항의 ‘정보시스템’의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용도에 한정되어 있음

다수의견과 달리 나는, 피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성격, 정보처리 방식의 위험성에 비추어 수권법률의 특정성과 명확성이 상당한 정도로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가 과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여 둔다 … 수기(手記)가 아니라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할수록, 분산보유하는 경우보다 하나의 통합체계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할수록, 개인정보의 접근·결합·이용이 용이하게 되므로 보다 강화된 보호가 필요하다. 그 자체로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산발적 개인정보일지라도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경우 자동검색체계를 통하여 다른 개인정보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부분적 인격상이 국가권력의 감시·통제와 지배 하에 놓일 수 있다.

- 현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 이태원 기지국 접속이력정보의 경우,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저인망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았음. 이처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저인망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후 감시하는 방식을 대량 감시(mass surveillance)라고 부름. 유럽평의회는 대량 감시를 “특정 개인에 대해 ‘특정적인(targeted)’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는 모든 감시”라고 정의하며, 유럽 기본권청은 대량 감시를 “‘사전적인 혐의 없이’ 시작되는 무작위적인 사용”이라고 설명함.
- 갈수록 고도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 또는 거대 기업이 이와 같은 대량 감시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정보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등장함. 대량 감시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한정하는 법률적인 통제와 사전적/사후적 감독이 필요하며, 기본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가 증가해 옴.

○ 추적이 용이한 한국적 기술 환경

- 국가별 편차는 있지만 어느 국가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함. 다만 타국가에서 개인 위치를 미세하게 추적하고 확인된 동선을 일반에 공개하거나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

- 한국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전국민을 특정하는 고유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 번호가 공공과 민간에서 개인 식별에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음. 간이하고 광범위한 K위치추적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에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직접 제공하거나 CI, DI 등 본인확인정보로 치환)를 이용하여 개인의 식별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환경에서 기인함.
- 전자출입명부제는 국민 가입율이 높은 특정 상업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여 실시하고 있음. 국가 정책인 전자출입명부제 실시가 민간 서비스 가입 및 본인확인을 유도하고 이(들)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일상적인 본인확인 환경이 구축되면 익명의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워짐.

○ 신기술 환경과 정보인권에 대한 도전

- 정보인권은 기술 환경의 변화와 인권의 위기 속에서 동태적으로 발전해 왔음. 특히 신기술 환경으로 인해 국가기업이 개인의 권리를 압도할 때 사회적으로 정보인권의 위기를 인식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정보인권의 개념을 발전 시켜 법제도적으로 수용하여 옴.
- Warren and 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는 즉석카메라 기술의 등장과 함께 언론기업이 결합한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를 호소한 바 있음²⁾.
- 2005년 현재가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적으로 승인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정보처리 자동화 및 정보파일 결합 등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있었음.

2) “Recent inventions and business methods call attention to the next step which must be taken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 and for securing to the individual what Judge Cooley calls the right ‘to be let alone.’ Instantaneous photographs and newspaper enterprise have invaded the sacred precincts of private and domestic life;(하략)” - Samuel D. Warren;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Vol. 4, No. 5. (Dec. 15, 1890).

…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 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보고서에서 기술 및 데이터 저장의 비용 저감 및 감시 수행을 위한 재정적·실무적 부담 감소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³⁾.
- 감염병위기 속에서도 국가와 기업의 정보처리가 지나치게 압도적이라면 이에 대응하여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함.

³⁾ 2. In the digital era,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lso have enhanced the capacity of Governments, enterprises and individuals to conduct surveillance, interception and data collection. As no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technological advancements mean that the State's effectiveness in conducting surveillance is no longer limited by scale or duration. Declining costs of technology and data storage have eradicated financial or practical disincentives to conducting surveillance. The State now has a greater capability to conduct simultaneous, invasive, targeted and broad-scale surveillance than ever before. In other words, the technological platforms upon which glob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ife are increasingly reliant are not only vulnerable to mass surveillance, they may actually facilitate it. - Navi Pillay.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A/HRC/27/37(30 June 2014).

【종합토론】



감염병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전자출입명부시스템**

2020.08.07.

조상연

중앙방역대책본부 시스템개선팀 /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

역학조사지원시스템
Epidemic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주관 기관 KEITI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참여기관 질병관리본부 N2M Dtonic PiNE Consulting & Integrator
협력기관 SK Telecom kt LG U+

운영기관 질병관리본부
개발주관 보건복지부
주관기관 SSIS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협력기관 NAVER SK telecom kt LG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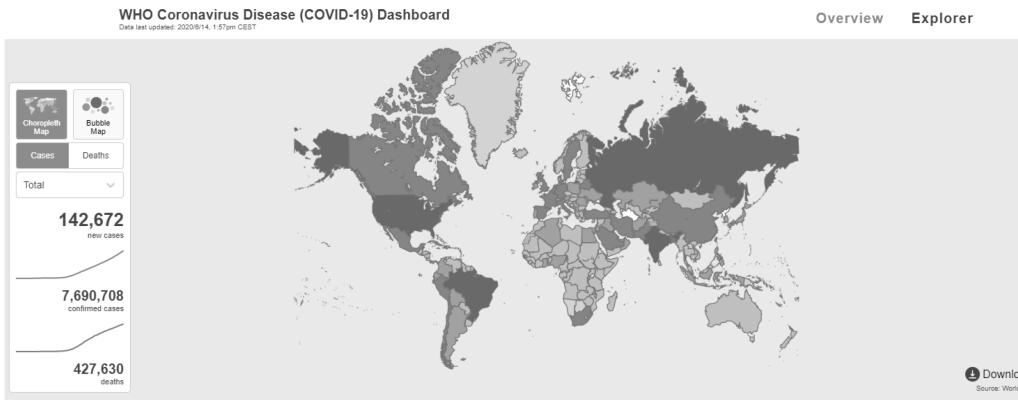
전자출입명부시스템
Korea Internet Pass system(KI-Pass)



I 사업 개요 II III IV V VI VII

1. 추진 배경

- WHO,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
(‘20. 6. 14 기준 확진자 7,690,708명, 사망 427,6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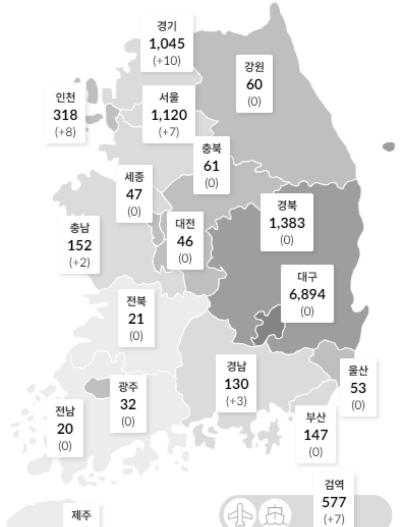


3

I 사업 개요 II III IV V VI VII

1. 추진 배경

- 국내 코로나19 총 확진 환자 12,121명('20.6.15)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출처: <https://www.arcgis.com/>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코로나19 격상 시기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1월 20일 국내 최초 발생
				국내 유입된 감염병의 재한적 전파	제한적 전파	1월 27일 확진자 4명
				국내 유입된 감염병의 재한적 전파	지역사회 전파	2월 23일 확진자 556명*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전국적 확산	
						*23일 오전 9시 기준

자료/ 질병관리본부

연합뉴스

4

I 사업 개요 II III IV V VI VII

1. 추진 배경

The timeline diagram illustrates the following events:

- 2018:** 국토부/과정부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 동력사업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개발 (Development of Smart City Data Hub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2019:** 일본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운영 (2020. 3) (Operation of Japan's COVID-19 Epidemiological Survey Support System (2020. 3)).
- 2020:**
 - Japan/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Data Hub-based COVID-19 Epidemiological Survey Support System Development Agreement (2020. 2).
 - Japan/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COVID-19 Epidemiological Survey Support System New Development (KETI 4 agencies).
 - Japan/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COVID-19 Epidemiological Survey Support System Modernization Development (2-phase development).

Checkmark: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 개발 추진 배경 (Background for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epidemiological survey support system modernization).

연구책임자: 김재호 센터장(전자부품연구원)

7

I 사업 개요 II III IV V VI VII

2. 과제 개요

감염병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개발

감염병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확진자의 위치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여 데이터 기반 확진자의 동선 분석, 감염 위험지역 분석, 감염 예상 네트워크자동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As-Is) 수작업 기반 역학조사
▽
(To-Be) 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을 이용한 역학조사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로 "초기 감염병 확산 억제" 실현

8

I 사업 개요

II III IV V VI VII

3. 관련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형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예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및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6.]

9

I 사업 개요

II III IV V VI VII

3. 관련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0. 3. 4.>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4. 그 밖에 이용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9., 2018. 4. 17., 2020. 3. 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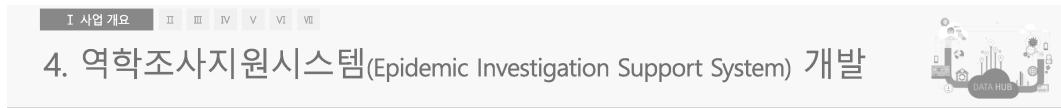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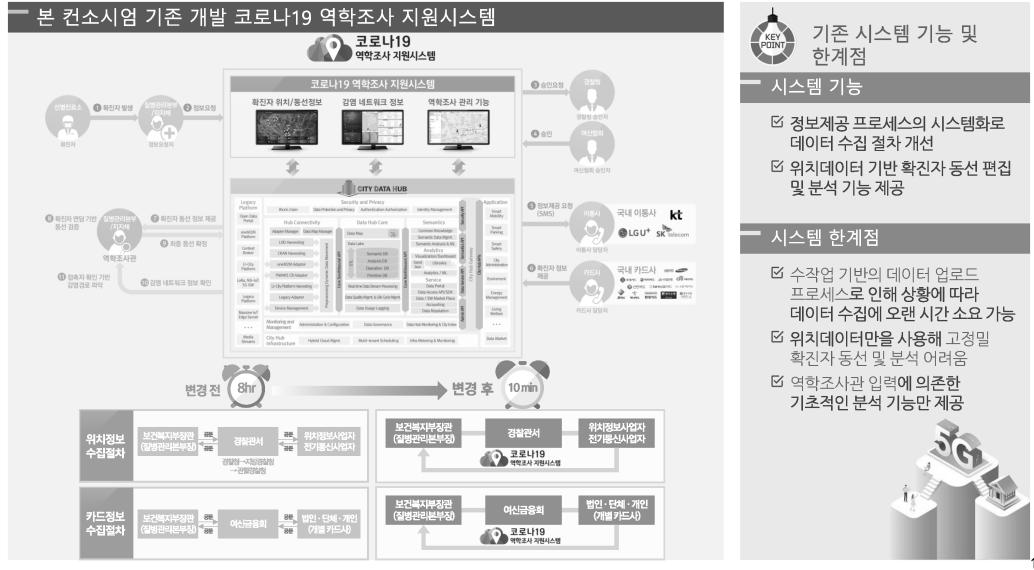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0. 3. 4.>

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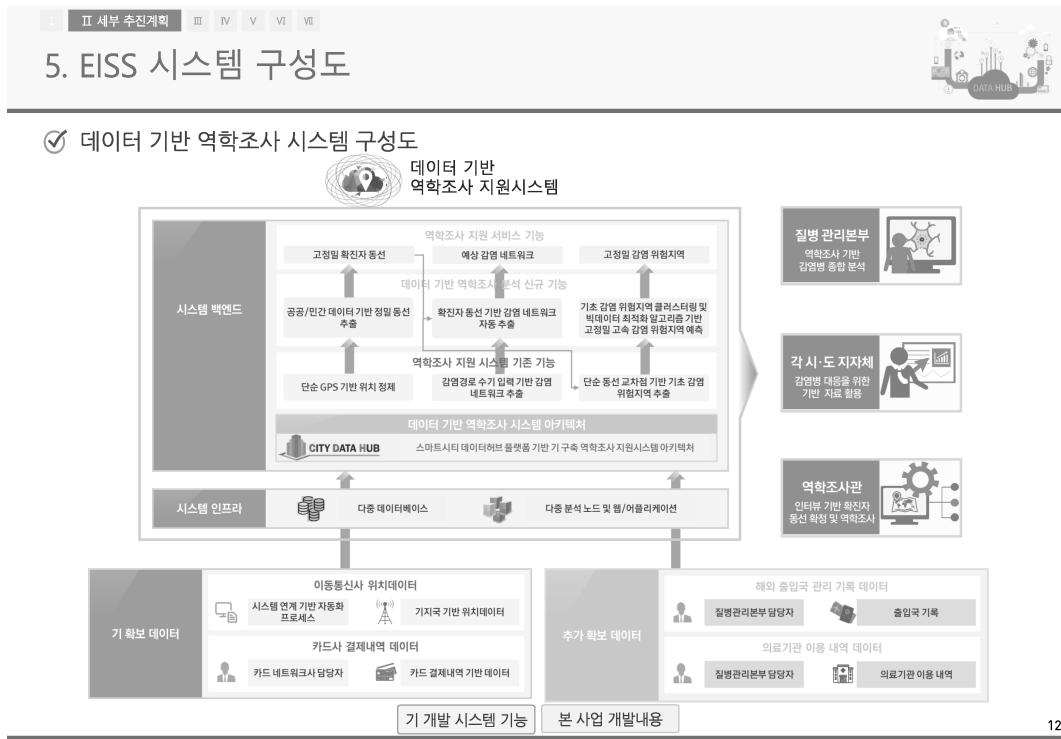
10



✓ 기존 데이터시티 플랫폼 기반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신속 개발(연구책임자: 김재호 센터장, 전자부품연구원)



11



12

II 세부 추진계획 III IV V VI VII

6. 주요 EIIS 서비스



✓ 서비스 구현 계획

데이터 기반 역학조사 시스템 핵심기능 개발

추가 데이터 활용 확진자 분석 기능



증명 및 민간 데이터 활용 기반 기관별 역학조사 시스템 확진자 분석 기능 고도화

확진자 동선 이용 감염병 위험지역 제시



기존 확진자 동선 분석 기반 감염병 확산 위험지역 도출 기능 고도화

역학조사 시스템 포털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증명 및 민간 데이터 활용 기반 역학조사 시스템 포털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KEY POINT 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 및 시스템 포털 고도화

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

- 기존 위치데이터와 추가 수집한 데이터 기반 고정밀 동선 분석 기능 제공
- 확진자 동선 기반 감염 네트워크 및 고정밀 확산 위험지역 자동 추출

시스템 포털

- 기구별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프론트엔드 개선
- 기구별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사용자 기능 고도화
- 질병관리본부/광역/기초 지자체 활용 시나리오 기반 서비스 기능 개발



13

II 세부 추진계획 III IV V VI VII

7. 데이터 연계



✓ 서비스 구현을 위한 요구 데이터 및 수집 활용 계획

기존 시스템 개발 간 기 확보된 데이터 및 추가 확보 필요 데이터

기 확보 데이터 리스트

구분	주요 정보	제공 기관	용량
기지국 기반 위치데이터	수초 단위의 기지국 기반 스마트폰 위치데이터	SKT, KT, LGU+	확진자 1명 당 하루 평균 약 2천 건
카드결제 내역 기반 위치데이터	카드결제 건에 대해 결제 일시 및 가맹점 주소 데이터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BC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추가 연계 데이터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6월 10일 시행



데이터 확보체계

기 확보 데이터

- 이동통신 3사 및 경찰청과 협력해 데이터 기 확보
- 카드 네트워크 8사 및 여신금융협회와 협력해 데이터 기 확보
- 각 카드사 별 상이한 시스템으로 자동 데이터 수집 기능 미개발

추가 연계 데이터

- 고위험시설(12종, 20.6.23일 기준) 의무설치 및 입·퇴실의 출입기록 확인 용이 → 신속한 접촉자 관리 가능



14



CHAPTER

II 전자출입명부(KI-Pass)

1.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배경

방역상의 필요성

-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상당 부분 하위 작성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명부상 인원 중 43.6% 만이 유선통화 가능
(유선통화 정확도 30% 내외에 불과)
- 수기작성시 필기구 접촉 등 교차감염 가능

IT(정보기술) 활용 필요

- QR코드 활용으로 하위기재 및 정보유출 우려 차단
- 집단감염 발생시 확진자 및 접촉자를 신속히 분석하여 방역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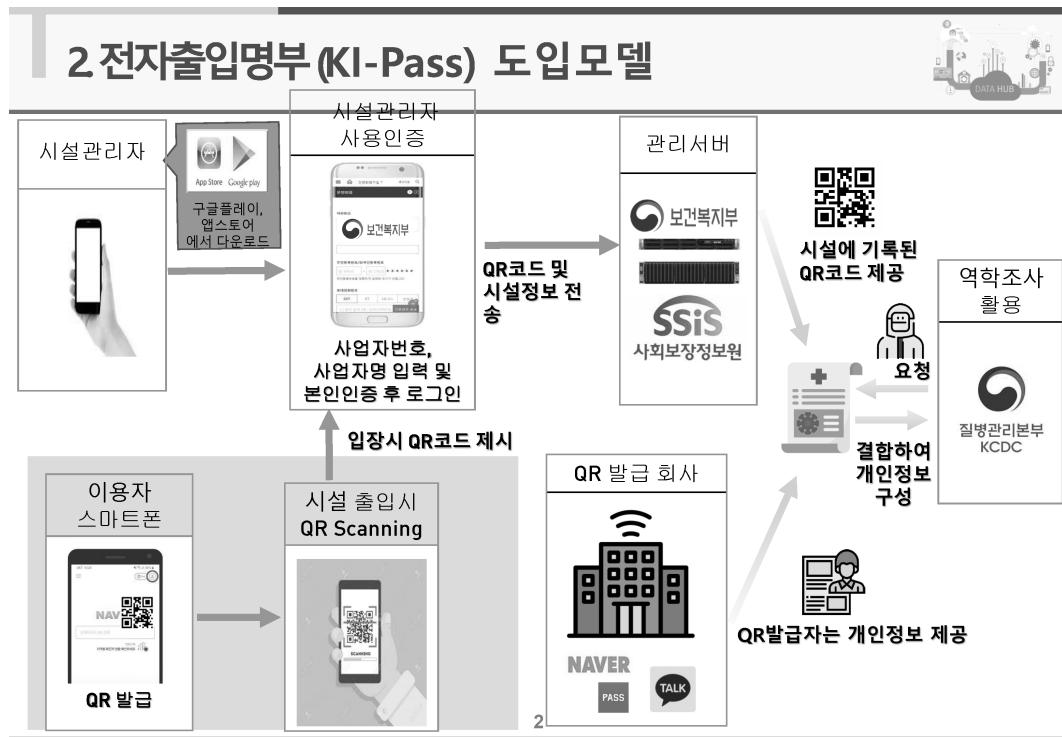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6월 10일 시행





4. 주요 검토사항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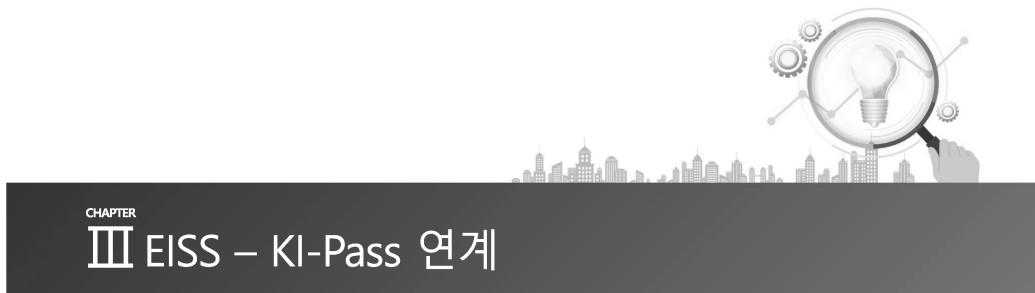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율적 개인정보 동의 하 정보수집
-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 소지시 수기명부 작성 (신분증 대조)

개인 정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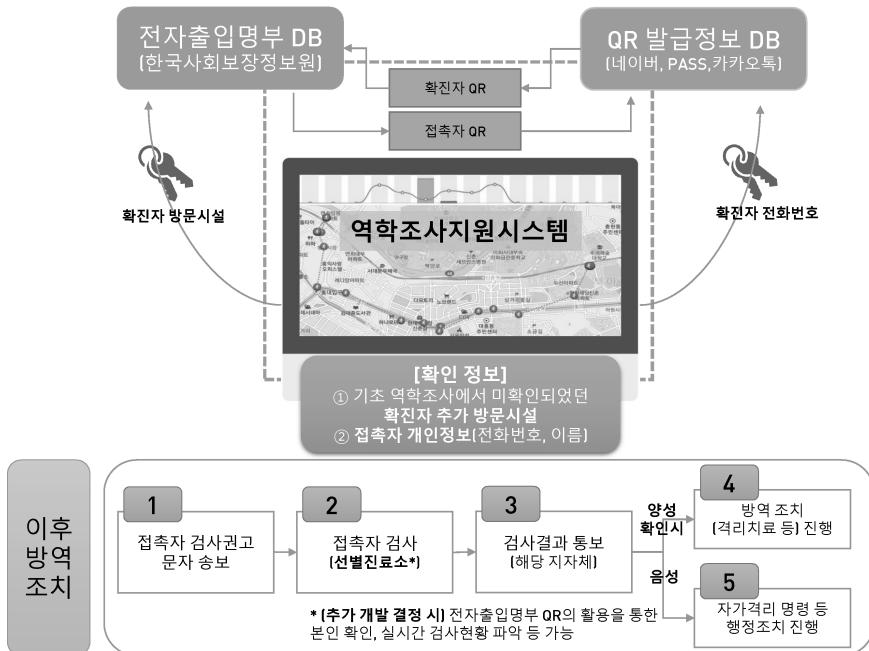
-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수집→분산 보관·관리→자동 파기 (4주 후)로 정보 유출 우려 방지
- 평상시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시 결합하여 방역활동에 활용

기술적 사항

-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하여 복제사용 차단
- 네이버외에 타 QR코드 발급회사 (PASS 등) 참여 추진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운영체계





감사합니다

조상연 보건연구관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조사팀 /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
picona@korea.kr

역학조사지원시스템
Epidemic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주관 기관 KETI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참여기관 질병관리본부 N2M Dtonic PiNE Consulting Integrator NH-NH

협력기관 SK Telecom kt LG U+

운영기관 질병관리본부

전자출입명부시스템
Korea Internet Pass system(KI-Pass)

개발주관 보건복지부

주관기관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기관 NAVER SK Telecom kt LG U+